식품위생교육 안내문 *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용

1. 교육대상

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(식품위생교육)에 따른 **영업자** 및 **유흥종사자**

2. 교육횟수(시간) 및 방법

- 영업(허가)신고 후 **매년 1회** (영업자: 3시간, 유흥종사자: 2시간)
- **온라인**교육(원격교육) ※ 교육기관 운영방침에 따른 집합교육

※ 미수료 시 과태료 부과(1차: 20만 원, 2차: 40만 원, 3차 이상: 60만 원)

3. 참고사항

- **서울특별시 내에서** 두 곳 이상 **같은** 업종으로 영업장 운영 시 한 곳만 교육을 받아도 수료 인정 → 다른 업종은 불인정

예시) **인정**: **일반**(강동구) - **일반**(광진구) / **불인정**: **일반**(강동구) - **휴게**(송파구)

- **강동구 내에서** 두 곳 이상 **다른** 업종으로 영업장 운영 시 한 곳만 교육을 받아도 수료 인정 → 다만, 같은 항 내에서만 교차 가능(다른 항의 업종은 불인정)

(교차 가능 업종) * 같은 항 내에서만 교차 가능

가. 식품제조·가공업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, 식품첨가물제조업

나. 식품소분업, 유통전문판매업,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

다. 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, 제과점영업

라. 단란주점영업, 유흥주점영업

※ 영업자가 직접 교육받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,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받은 경우는 적용 불가

예시) **인정**: 다. **일반**(강동구) - 다. **휴게**(강동구) / **불인정**: 다. **일반**(강동구) - 라. **유흥**(강동구)

4. 업종별 위생교육기관 연락처

교육대상	위생교육기관명	기관 홈페이지 (교육 접속 사이트)	연락처 (강동구지회)
일반음식점 영업자	한국외식업중앙회	https://www.ifoodedu.or.kr	02-6191-2937 (02-477-3737~9)
1) 일반음식점영업자 2)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 3) 위탁급식영업자	한국외식산업협회 (소속회원에 한함)	https://www.kfoodedu.or.kr	02-449-5009
휴게음식점영업자	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	https://kcraedu.or.kr	02-425-6126~8 (02-425-6069)
제과점영업자	대한제과협회	https://bakery.or.kr	02-2055-3345~8 (02-474-8361)
단란주점영업자	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	http://www.danran.or.kr	02-2058-0823 (02-476-0012)
유흥주점영업자	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	http://kcconb.com	02-543-9955